

2015년 선학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목적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 감사 개요

☐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5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5. 09. 07. ~ 09. 10. [4일간]

☐ 감사범위 : 2013. 09. 0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1

총괄

☐ 감사처분 내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8건)			재정상 (3건)			신분상	
시정	주의	현지조치	추징(1)	회수 (1)	환불 (1)		
4	3	1	14천원	1,598천원	25천원	—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8건	3건		
1	예산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집행대상 부적정 8건, 290천원	주의			
2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산업무 소홀 ☞ 집행잔액 1,598,780원 회비로 이체, 부과가치세 신고 3건 누락	시정	회수 1,598천원		
3	주민등록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징수 부적정 ☞ 수수료면제 부적정 등 8건	시정	추징 14천원 환불 25천원		
4	"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습득주민등록증 처리 대장관리 부적정 등 7건	시정			
5	사무	통·반장 관리 업무 소홀 ☞ 통장신분증 미발급 등 통·반장 관리 소홀	시정			
6	공사	계약업무 및 공사 감독업무 처리 소홀 ☞ 원가계산 소홀, 공사감독 업무 소홀	주의			
7	민방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교육훈련 면제자 승인절차 미이행 52명	주의			
8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 소홀 ☞ 관련 대장 미작성 및 담당자 결재 미이행	현지조치			

- 이번 선학동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11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4, 주의3, 현지조치1), 재정상 조치(회수 1,598천원/1건, 환불 25천원/1건, 징수 14천원/1건)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I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 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격려품 지급대상은 소속 상근직원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업무추진 유관기관 등의 직무활동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생일자 축하물품 구입 등 8건 290,000원에 대하여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에 서 벗어난 상품권을 소속 상근직원 등에게 제공함.

【 행정상 주의 】

2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산 업무 소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제1항에 의거 '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치센터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는 2014.09.26.(금) 18:30에 선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선학 작은 음악회」 실시 후, 정산결과 1,598,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수강료 수입금으로 반납하지 않고, 2014.10.27.일 ■■■ 개인 명의의 선학동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통장으로 이체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선학 작은 음악회 실시를 위해 구입한 물품 중 3건 대하여 계좌이체를 실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총 240,907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음.

【 행정상 시정, 재정상 1,598,780원 회수 】

3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분실 · 훼손, 용모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 · 징수하며, 2006년 11월 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위 · 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면제가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 외 4인에 대해 착오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처리하지 아니하고, ■■■는 수수료를 인증처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행정상 시정, 재정상 : 25,000원 환불, 14,400원 추징 】

4**주민등록****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에 의하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습득된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간 찾아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파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은 습득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간 찾아가지 아니하여 파기하고 회수처리 하였으나 처리 사항을 대장에 정리하지 않았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6건에 대하여 접수일에 바로 출력하지 아니하고 최대 98일이 지난 후 출력하여 일일결산을 지연하는 등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행정상 시정 】**5****서무일반****통·반장 관리 업무 소홀**

-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따르면 위촉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이 사망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 해촉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통장신분증의 발급, 재발급, 회수, 폐기 사항을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4.1.1.일자로 위촉된 통장 2명에 대하여 통장증을 발급 신청 한 사실이 없으며, 통장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통·반장 관리를 소홀히 함.

【 행정상 시정 】

6

공사 · 계약

계약업무 및 공사 감독 업무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시행할 때에는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주민자치센터(별관) 다목적실 공사」 시행 시 가격조사 등 적정성 검토 미비로 자재단가(합판, 각재) 과다반영 및 제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미반영 등 원가계산에 소홀하였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감독관 미지정과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등 건설공사 관련업무를 소홀히 함.

【 행정상 주의 】

7

민 방 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

은 3개월이상 해외 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출국자로) 일괄 면제 조치하는 등 민방위 업무 처리에 소홀함.

【 행정상 주의 】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고문) 위·해촉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나
-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시 선발과 위촉의 내부문서 생산에 갈음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출근부는 담당자가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4년 5월과 6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출근 여부를 주민자치센터 실무자가 확인하여 서명함으로써 담당자의 확인 없이 강사료와 실비가 매월 지급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현지조치 】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우리마을 살짜기옴서예” >

☐ 추진 배경

- 위기상황, 거동불편, 복지정보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발굴체계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3월 ~ 11월
- 대 상 : 관내 주민 누구나
- 운영방법
 - ▶ 주 기 : 월 1회 / 매월 세번째 수요일
 - ▶ 상담원 구성 : 선학동 사회복지공무원이 2인 1조로 상담 실시
 - ▶ 상담실 설치 장소 :
 - 선학동 관내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운영
 - 관내 9개소 경로당을 상담 장소로 활용하여 실시

☐ 기대 효과

-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로 복지욕구가 있는 개별가구의 서비스 연계 및 사회적응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